

**[사 건 명] 행심 2016-33**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33일, 특별교육 3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이며 ○○부 주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고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2학년 ○○부원으로, 청구인이 빨래를 못하게 하고, ○○부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놀리는 등으로 모욕감을 주었다.

나. 청구인은 ○○부의 기강과 단합을 위해 감독의 지시대로 한 행위이지만 피해학생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느껴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 2016. 5.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전학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6. 9. 9.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2016. 9. 13.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2016. 10. 17. 위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추인이 있었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운동부 주장으로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운동부의 단합과 책무를 다하려다 발생한 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하다.

나. 피해학생은 ○○부가 있는 경남 함안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청구인과 여전히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 청구인은 이번 사건으로 □□대 ○○부 체육특기자로서의 진학이 좌절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학 갈 때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특성화고 3학년의 전학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전학을 못가고 있어 행정심판 청구일 현재(2016. 9. 9.) 출석정지 45일이 지났다. 출석정지 60일이 되면 유예되어 졸업을 하지 못한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 특기자로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상

황이며, 행정절차상 전학이 되지 않으면 출석정지가 계속되어 유예가 되어 고등학교 졸업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에게는 개인 사정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에 의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명백한 학교폭력에 의한 처분이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부(운동부) 주장이자 선배라는 이유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빨래를 못 돌리게 하고, ○○부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놀리는 등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빨래를 못 돌리게 하고, ○○부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놀리는 등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한편으로는 ○○부 주장으로서 ○○부의 기강과 단합을 위해 한 행위로 보여지며, 이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측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며, 청구인이 본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전학처분만은 하지 않아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출석정지 및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서 가볍지 않은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33일 및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1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33일 및 특별교육이수 3시간, 청구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1시간으로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